송 재 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현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안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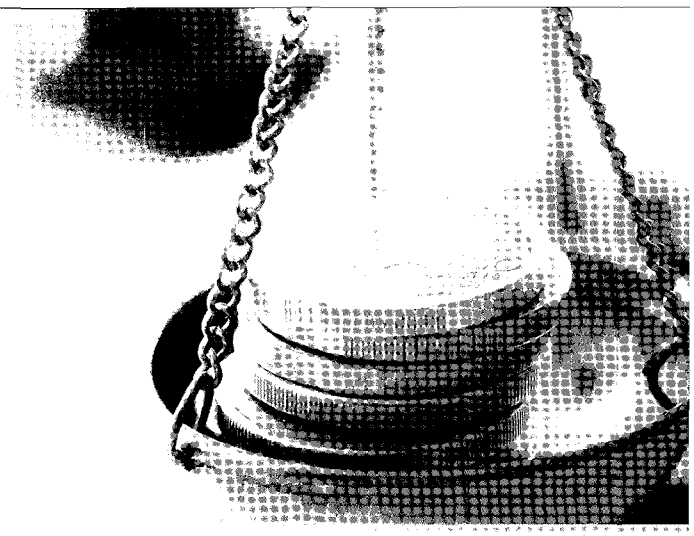

명의대여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

자기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라고 한다.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제45조의2)

가. 개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란, 권리이전이나 권리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주식가액을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단,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함).

즉,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거나 유예기간(1997. 1. 1~1998. 12. 31) 중에 주식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국세청에서는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2006년부터 매년 증여세 등 관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주로 주식취득과 관련해서 명의신탁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내는데 있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나. 주식 명의신탁의 유형

1) 전 · 현직 임직원 등 회사관계자를 통한 명의신탁
2) 부모 · 형제 등 가족을 통한 명의신탁
3)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지인을 통한 명의신탁

다. 주식 명의신탁의 이유

1)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만으로도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2) 배당소득이 종합소득 합산과세되는 경우에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과점주주 : 법인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과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라. 명의대여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

1) 증여세 과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대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2)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의 지정

법인의 주주명부 상의 명의자가 과점주주(법인주식 총수의 50%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3)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 및 공과금 부담

사업자등록에 있어서 명의를 대여해주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대여자에게 과세되는데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합산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의 세금부담이 더욱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부담도 생긴다.

또한 소득금액이 증가되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도 같이 늘어난다.

4) 예금 · 부동산 등의 재산압류 및 공매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압류 · 공매처분되어 체납세금에 충당될 수 있다.

5) 금융거래상의 불이익 및 출국규제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 신용카드 사용정지 · 신용불량자 등재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발급 제한 · 출국금지 조치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6)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벌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대여자의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어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명의대여를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 관리되어 정작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